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3-7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열람공고

1.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14호(2020.2.5.)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지역 일원[해양수산부고시 제2019-32호(2019.2.28.)]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3. 1. 18. ~ 2023. 2. 2.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440-4652)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서 (변경없음)

지 역 명	위 치	면적(㎡)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지역	부산광역시 동구 일원 (자성대부두, 부산진역CY,좌천동, 범일동 일원)	1,250,980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단,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

구 분	제 외 내 용
건축분야	-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토지형질변경분야	-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성토(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포함)
기타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구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는 일부 허용

마.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변경)

- 기정 : 2020. 2. 5. ~ 2023. 2. 4. (3년)
- 변경 : 2023. 2. 5. ~ 2025. 2. 4. (2년 연장)

(단, 제한기간 중 제한지역에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결정고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효력 상실)

바. 관련도면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끝.